



한국의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서

2022년 4월

GDA | 국제 데이터 연합(The Global Data Alliance)¹는 먼저 최근 실질적으로 체결된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이하 “KSDPA”)에 관련하여 본 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 개요

GDA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성 확립에 기여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연합체입니다. 한국은 GDA 회원사들의 중요한 시장으로써, GDA 회원사들은 한국에 수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투자했으며, 수천 명에 이르는 한국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전은 항공우주, 의료, 첨단 제조업, 운송 및 통신 등 한국 내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GDA 회원사들의 활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GDA 회원사의 한국 지사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 제품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디지털 도구들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GDA는 한국이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협정(이하 “DEA”)인 KSDPA를 실질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KSDPA의 국제 상업적 측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II. 논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연결성이 경제 활동,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약 80여 개국이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수출 및 기타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국경 간 데이터 및 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컴퓨터 시설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한 중요한 방어책입니다. KSDPA 제 14.14 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4.15 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KSDPA의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DA는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¹ The Global Data Alliance is a cross-industry coalition of companies that are committed to high standards of data responsibility and that rely on the ability to transfer data around the world to innovate and create jobs. Alliance members are headquartered across the globe and are active in the advanced manufacturing, aerospace, automotive, consumer goods, electronics, financial services, health, media and entertainment, natural resources, supply chai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among others. GDA | The Software Alliance administers the Global Data Allianc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Global Data Alliance, please see: <https://www.globaldataalliance.org/downloads/aboutgda.pdf>

그러나 KSDPA의 컴퓨터 시설 현지화 금지 규정은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 즉, 싱가포르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키거나 한국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DA는 금융 규제 당국이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래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정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³ 금융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될 경우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 규제 당국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현지화는 금융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유지하려는 금융 규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컴퓨터 시설과 데이터를 현지화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 행위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이 치명적일 수 있는 금융 부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국가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자사의 일원화된 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터 처리 센터를 사용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 제 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자사의 데이터 위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이러한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현지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 공급자는 사이버 보안 기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최신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및 제어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글로벌 업체와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현지화로 보안 위협 사례를 사이버 보안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것이 지연된다면 해당 지역의 고객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해당 고객의 정보 보호 및 보안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현지화로 발생하는 제한점으로 인해 부정행위의 사건 정보를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업로드 되는 것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고객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카드 네트워크 및 금융 서비스 부문 사업자들의 의해 제공되는 부정행위 대응 체계는 거래 시 각 거래의 부정행위의 위험을 해석하고 측정하기 위한 정교한 모니터링 능력과 신속한 감별력을 요구합니다. 각 거래의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해당 거래의 사실에 따라 모든 거래와 해당 계정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평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패턴이 국가 경계선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 탐지 모델은 글로벌 거래 데이터 또는 여러 국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부정행위는 카드 소지자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다른 국가의 비즈니스와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정행위 방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위치와 카드 보유자의 위치 모두에 기초하여 글로벌 또는 다국적 데이터 세트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권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규제 당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데이터 현지화 역시 규제 감독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범국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일 상당한 양의 국경과 대륙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컴퓨터

² KSDPA, Article 14.15 (4)

³ KSDPA, Article 14.16 (2)

시설에서 가공되고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취득하는 등, 규제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이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BSA는 싱가포르가 호주와 영국과 체결한 DEA에서 채용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싱가포르-호주 DEA 제 25 조 2 항에 따르면, 금융 규제 당국이 국외에 위치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경우 어떤 당사국도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터 시설 및 데이터를 현지화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영국 DEA는 당사국이 “금융 규제 및 감독 목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영국 자유무역협정 제 8.54 조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또한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한 당사국에게 (1)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2)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하기 전에 상대국의 규제 당국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데이터 연결성에 관한 미국-싱가포르 공동 성명서⁴ 역시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양국은 다음과 같은 비구속적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국경 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금융 규제당국이 규제 및 감독에 필요한 데이터에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접근이 가능한 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한다.
-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컴퓨터 시설을 자국 내에서 이용하도록 요구하기 전,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BSA는 한국이 향후 체결하는 DEA에서 싱가포르-호주 및 싱가포르-영국 DEA가 설정한 최고 수준의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BSA는 또한 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향후 KSDPA의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 당국과 비구속적 합의 채택 및 양해 각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⁴ United States-Singapore Joint Statement on Financial Services Data Connectivity, February 2020,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united-states-singapore-joint-statement-on-financial-services-data-connectivity>

III. 결론

다시 한번 KSDPA 에 관한 GDA 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GDA 는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컴퓨터 시설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KSDPA 의 구속력 있는 규정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아울러 KSDPA 의 컴퓨터 시설 위치에 관한 조항이 빠른 시일 안에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적용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m Shen Hong

Tham Shen Hong
Manager, Policy-APAC
Global Data Alliance